

[별표 8] <개정 2018. 9. 28.>
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(운전자)(제93조제1항 관련)

범 칙 행 위	근거 법조문 (도로교통법)	차량 종류별 범칙금액
1. 속도위반(60km/h 초과)	제17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13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12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8만원
1의2.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(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)	제53조제1항 · 제2항 · 제4항, 제53조의2	
1의3.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	제53조제3항	
1의4.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 (주 ·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)	제54조제1항	
2. 속도위반(40km/h 초과 60km/h 이하)	제17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10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9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6만원
3.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지 운전	제49조제1항제9호	
3의2.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	제51조	
4. 신호 · 지시 위반	제5조	1) 승합자동차등: 7만원
5. 중앙선 침범, 통행구분 위반	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	2) 승용자동차등: 6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4만원
6. 속도위반(20km/h 초과 40km/h 이하)	제17조제3항	4) 자전거등: 3만원
7. 횡단 · 유턴 · 후진 위반	제18조	
8. 앞지르기 방법 위반	제21조제1항 · 제3항, 제60조제2항	
9. 앞지르기 금지 시기 · 장소 위반	제22조	
10.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	제24조	
11.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(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	제27조제1항 · 제2항	

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)		
12.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(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)	제28조제2항 · 제3항	
12의2.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· 일시정지 위반	제29조제4항 · 제5항	
12의3.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	제29조제6항	
13. 승차 인원 초과,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	제39조제1항 · 제3항 · 제6항	
14. 어린이 ·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	제49조제1항제2호	
15.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	제49조제1항제10호	
15의2.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	제49조제1항제11호	
15의3.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	제49조제1항제11호의2	
16.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	제 5 0 조 제 5 항 제 1 호 · 제2호	
17. 삭제 <2014.12.31.>		
18. 삭제 <2014.12.31.>		
19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	제60조제1항	
20.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·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	제61조제2항	
21. 통행 금지 · 제한 위반	제 6 조 제 1 항 · 제 2 항 · 제4항	1) 승합자동차등: 5만원 2) 승용자동차등: 4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3만원 4) 자전거등: 2만원
22.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	제15조제3항	
23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	제19조제1항	
24.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	제21조제4항	
25.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	제25조	
26.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	제26조	
27.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	제 2 7 조 제 3 항 부 터 제5항까지	

28. 삭제 <2016.2.11.>		
29. 정차 · 주차 금지 위반	제32조	
30. 주차금지 위반	제33조	
31. 정차 · 주차방법 위반	제34조	
31의2.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· 주차방법 위반	제34조의3	
32. 정차 ·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용	제35조제1항	
33. 적재 제한 위반,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	제39조제1항 및 제4 항부터 제6항까지	
34. 안전운전의무 위반	제48조제1항	
35. 도로에서의 시비 · 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	제49조제1항제5호	
36. 급발진, 급가속,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·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	제49조제1항제8호	
37.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	제49조제1항제12호	
38. 삭제 <2014.12.31.>		
39.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	제60조제1항	
40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 횡 단 · 유턴 · 후진 위반	제62조	
41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· 주차 금지 위반	제64조	
42. 고속도로 진입 위반	제65조	
43. 고속도로 ·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의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	제66조	
44. 혼잡 완화조치 위반	제7조	1) 승합자동차등: 3만원
45. 지정차로 통행 위반, 차로 너 비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 반(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)	제14조제2항 · 제3 항 · 제5항	2) 승용자동차등: 3만원 3) 이륜자동차등: 2만원 4) 자전거등: 1만원
46. 속도위반(20km/h 이하)	제17조제3항	
47. 진로 변경방법 위반	제19조제3항	
48. 급제동 금지 위반	제19조제4항	
49. 끼어들기 금지 위반	제23조	
50. 서행의무 위반	제31조제1항	

51. 일시정지 위반	제31조제2항	
52. 방향전환 ·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	제38조제1항	
53.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행	제49조제1항제6호	
54.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	제49조제1항제7호	
55. 지방경찰청 지정 · 공고 사항 위반	제49조제1항제13호	
56. 좌석안전띠 미착용	제50조제1항	
57. 이륜자동차 ·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	제50조제3항	
58.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· 표지 금지 위반	제52조제4항	
59. 최저속도 위반	제17조제3항	1) 승합자동차등: 2만원
60.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	제19조제1항	2) 승용자동차등: 2만원
61. 등화 점등 · 조작 불이행(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)	제 3 7 조 제 1 항 제 1 호 · 제3호	3) 이륜자동차등: 1만원 4) 자전거등: 1만원
62.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(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)	제49조제1항제4호	
62의2.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승차 거부	제50조제5항제3호	
63. 택시의 합승(장기 주차 ·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· 승차거부 · 부당요금징수행위	제50조제6항	
64.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	제50조제7항	
64의2.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	제44조제1항	자전거: 3만원
64의3.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 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	제44조제2항	자전거: 10만원

65. 돌, 유리병, 쇳조각,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	제68조제3항제4호	모든 차마: 5만원
66.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	제68조제3항제5호	
67.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.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. 가목 외의 경우	제73조제2항	차종 구분 없음: 6만원 4만원
68.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	제95조제2항	차종 구분 없음: 3만원

비고

- 위 표에서 "승합자동차등"이란 승합자동차, 4톤 초과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.
- 위 표에서 "승용자동차등"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.
- 위 표에서 "이륜자동차등"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.
- 위 표에서 "자전거등"이란 자전거, 손수레,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.
-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.